

2022.01.06

산업안전보건법 법령 요지

산업안전보건법	주요 내용	벌칙
제 57 조(산업재해 발생 은폐 금지 및 보고)	○ 산업재해 발생 보고 ※ 재발방지계획서 등 작성 3 년 보관 - 사망 시: 지체 없이 전화 및 팩스 보고(고용노동부 관할지청) - 3 일 이상의 휴업재해 발생 시: 관할지청에 1 달이내 산업재해조사표 보고	· 은폐: 1 년 이하 징역 또는 1 천만원 이하 벌금 · 보고: 1500 만원 이하 과태료
제 34 조 (법령요지게시)	○ 산업안전보건법 요지 및 안전보건관리 규정을 게시 (근로자들이 알게 하여야 함)	500 만원 이하 과태료
제 37 조 (안전표지의 부착 등)	사업장의 유해 또는 위험한 시설 및 장소에 경고, 비상 시 조치 안내 등의 안전, 보건표지를 설치하거나 부착하여야 함 ※시행규칙 별표 1 의 2 참조 - 금지표지/경고표지/안내표지/지시표지	500 만원 이하 과태료
제 16 조(관리감독자) 제 17 조(안전관리자) 제 18 조(보건관리자) 제 19 조(안전보건담당자)	○ 상시근로자의 인원과 건설공사의 규모 별 관리감독자, 안전관리자, 보건관리자, 안전보건담당자를 지정하거나 선임 (대행기관 위탁 가능) ○ 작업반장, 생산과장·부장 등 관리감독자에게 안전점검 등 업무를 수행케 해야 함	각 500 만원 이하 과태료
제 38 조(안전조치)	○ 위험기계·기구, 설비 위험 방지: 프레스·리프트·크레인·동근통 등 방호조치 ○ 전기·열·기타 에너지로 인한 위험 방지: 접지, 누전차단기 설치 등 ○ 추락·붕괴·낙하·비래 위험 방지: 안전난간 설치, 안전모·안전벨트 착용 등 ○ 굴착·하역·벌목·조작·운반·해체·중량물 취급 등 위험 방지 조치: 작업계획서 작성(중량물 취급, 트럭·지게차 등 차량계하역운반기계) 등	근로자 사망 시 7 년이하 징역 또는 1 억원 이하 벌금 등
제 39 조(보건조치)	○ 분진, 밀폐공간작업, 사무실오염, 소음 및 진동, 이상기압, 온·습도, 방사선, 근골격계부담작업, 화학물질 등에 기인한 건강장해의 예방 조치 - 방독마스크·방진마스크·귀마개 등 보호구 착용, 국소배기장치 설치, 휴게시설, 밀폐공간 프로그램 등 조치	근로자 사망 시 7 년이하 징역 또는 1 억원 이하 벌금 등
제 63 조 (도급인의 안전보건 조치)	○ 안전보건에 관한 협의체 구성 및 운영, 작업장의 순회점검 등 안전보건관리 ○ 수급인이 근로자에게 하는 안전보건교육에 대한 지도와 지원	500 만원 이하 벌금
제 66 조(도급인의 관계 수급인에 대한 시정조치)	○ 도급인이 수급인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행위 시정을 위해 필요한 조치	500 만원 이하 과태료
제 58 조 (유해한 작업의 도급금지)	도급작업, 수은·납·카드뮴 제련·주입·가공·가열 작업 도급금지 허가대상물질을 제조하거나 사용하는 작업 도급금지	10 억원 이하의 과징금
제 29 조 (안전·보건 교육)	○ 정기안전보건교육: 비사무직(6 시간/분기), 사무직(3 시간/분기) ○ 채용 시 교육: 일용직 (기초안전보건교육 4 시간, 건설업 외 (8 시간)) ○ 특별교육: 일용직(2 시간이상), 건설업 외(16 시간이상) ○ 관리감독자 교육: 전 업종, 작업반장 등을 관리감독자로 지정, 연간 16 시간	500 만원 이하 과태료
제 80 조(유해·위험 기계·기구 등의 방호조치)	○ 유해·위험기계 등의 방호조치 실시 프레스·전단기·가스집합용접장치·크레인·승강기·리프트·용접기·압력용기·보일러·롤러기· 연삭기·목재 가공용 동근통·동력식 수동대패·산업용로봇 등은 방호장치를 하지 않고는 사용하면 안 됨	1 년 이하 징역 또는 1000 만원 이하 벌금
제 84 조(안전인증)	○ 유해·위험 기계 등의 안전인증 프레스·전단기·절곡기·크레인·리프트·압력용기·롤러기·사출성형기·고소작업대· 곤돌라·기계톱(이동식) 등은 의무 안전인증대상 기계·기구로서 제조자는 안전인증을 받아야 함 (사용 사업주는 근로자들이 안전인증 받은 제품만을 사용토록 해야함)	3 년 이하 징역 또는 3,000 만원 이하 벌금
제 93 조(안전검사)	○ 유해·위험기계 등의 안전검사 실시 프레스·전단기·크레인(2 톤이상) 리프트·압력용기·곤돌라·국소배기장치·원심기. 화학설비· 건조설비·롤러기· 사출성형기 등은 2 년마다 안전검사를 받아야 함	1,000 만원 이하 과태료
제 118 조(유해·위험물질의 제조 등 허가)	○ 유해 화학물질 제조·사용시 노동부관할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함 - 디클로로벤지딘·알파나프틸아민·크롬산아연·베릴륨·비소 등 허가대상물질	5 년 이하 징역 또는 5,000 만원 이하 벌금
제 119 조(석면조사) 제 122 조(석면의 해체제거)	○ 건축물 등 철거 시 석면조사를 실시해야 함 ○ 석면 해체제거 시 석면해체·제거 작업기준을 준수하여야 함 ○ 일정 면적 이상의 석면 함유 건축물·설비 철거 시 석면해체제거업자를 통해 철거·해체 하여야 함	5 년 이하 징역 또는 5,000 만원 이하 벌금
제 114 조(물질안전보건자료 작성, 비치 등)	○ 화학물질 등 사용시, 저장·제조 시 물질안전보건자료(MSDS)를 게시 ○ 화학물질의 용기·포장 등에 경고표지 부착 및 근로자에게 교육 실시	500 만원 이하 과태료
제 36 조 (위험성평가의 실시)	○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을 찾아내어 위험성을 결정하고, 그 결과에 따라 조치 실시	1,000 만원 이하 과태료
제 125 조(작업환경측정)	○ 소음(80dB 이상), 화학물질, 분진, 고열 등에 근로자가 노출되는 사업장은 작업환경측정 실시 - 반기 1 회 / 2 회 연속 노출기준 미만이면 년 1 회	1,000 만원 이하 과태료
제 129 조(일반건강진단) 제 130 조(특수건강진단 등)	○ 일반건강진단·사무직은 2 년에 1 회, 비사무직은 1 년에 1 회 ○ 특수건강진단·소음·분진·화학물질·고열 등 노출 근로자(6 개월~2 년에 1 회) ○ 배치전건강진단 : 신규채용, 작업전환 시 특수건강진단 대상업무에 종사할 경우 실시	1,000 만원 이하 과태료
제 164 조(서류의 보존)	○ 산업재해 발생기록, 관리책임자·안전관리자·보건관리자·산업보건의 선임에 관한 서류, 석면조사 서류, 작업환경측정·건강진단 서류 등 (3 ~ 30 년간 보관)	300 만원 이하 과태료